

정 관

(2015.10.15. 11차 개정)



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2절 회계

제3장 임원

제4장 이사회

제5장 수익사업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8장 공고방법

제9장 보칙

정 관

1977.01.28. 인가
2015.10.15.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이념과 구세군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각종 구호 및 봉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91.11.18.)(1993.09.13.)(1999.05.29.)

제2조(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69(신문로1가)에 둔다.(2014.09.29.)

1. 수원지부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4번지 9(매교동)(2014.09.29.)

제4조(사업의 종류)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999.05.29.)

1.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1999.05.29.)
2. 아동직업보도시설 설치 운영사업(1999.05.29.)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1999.05.29.)(2002.05.02.)
4.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1999.05.29.)
5. 기술교육시설 설치 운영사업(1999.05.29.)
6. 모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1993.09.13.)(1999.05.29.)
7.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1999.05.29.)
 - 가) 노인무료의료사업(1999.05.29.)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2002.03.15.)
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1999.05.29.)
9. 실직노숙자 무료숙박 사업(1999.05.29.)
10. 알콜 마약, 도박 중독자를 위한 재활지원사업(1999.05.29.)(2007.01.18.)
11.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 건강복지 지원사업(2007.01.18.)
 - 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사업(2007.01.18.)
 - 나)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복지지원 및 치료시설 설치 운영사업(2007.01.18.)

- 다)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호스피스 요양원, 쉼터 설치 운영사업(2007.01.18.)
- 12. 화장지 제조 판매 수익사업(2007.07.11.)
- 13.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사업 (2015.10.15.)
- 1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등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1993.09.13.)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5조(자산구분)

-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자산의 관리)

- ①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 국제본영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령과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유지방법)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회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를 당회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이를 회계연도 2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법인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2002.03.15.)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2014.09.29.)
- 3. 이사 : 8인(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2014.09.29.)
- 4. 감사 : 2인(2014.09.29.)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14.09.29.)
- ②이사 중 구세군 국제본영 대장에 의해 임명된 사령관, 서기장관, 인사국장, 업무국장, 기획국장, 재무부장으로 한다. 시, 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추천이사 2인 포함한다.(2013.09.23)
- ③선임된 임원은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2013.09.23)
- ④감사 2인은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 도지사가 추천한 1인으로 한다.(2013.09.23)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2013.09.23)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 ①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사령관직에 있는 이사로 하며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서기장관직에 있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09.29.)
-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2002.03.15.)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2002.03.15.)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2002.03.15.)
 - 4.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2002.03.15.)
 - 5.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2002.03.15.)

제20조(대표권의 제한)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1조(임원의 대우)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

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겸직금지)

-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 ①이 법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2014.09.29.)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의 소집 등)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③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장이 이를 전결한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제적 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회의록)

- ①이사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의 종류)

-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07.07.11.)
 - 1. 목공예 사업
 - 2. 철구 사업
 - 3. 화장지 제조사업(2007.07.11)
-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1조(수입의 처분 및 관리)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부터 생

긴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2002.03.15.)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사무국)

-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직원)

- ①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및 합병)이 법인이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7조(공고의 방법)

- 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실는다.
-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세군군령군율,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1991. 11. 18.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③ 1993. 09. 13.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④ 1999. 05. 29.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⑤ 2002. 03. 15.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⑥ 2005. 05. 02.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⑦ 2007. 01. 18.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⑧ 2007. 07. 11.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⑨ 2012. 06. 07.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⑩ 2013. 09. 23.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⑪ 2014. 09. 29.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⑫ 2015. 10. 15.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